

기획논문

무형문화재 '원형규범'의 이행과 의미 고찰

이재필

국립무형유산원 조사연구기록과 과장

국문초록

1970년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제도가 도입되면서 '원형규범'이 채택되었다. 규범으로 채택되기 이전에도 '원형'은 문화재 보존의 방향으로 통용되고 있었다. 법규상 원형의 개념은 형태적인 개념이다. 그러나 구전 및 실연에 의해 전승되어온 무형문화재의 특성상 과거 어느 시점에 누구에 의해 실연되는 것을 원형의 형태로 확인하거나 특정할 수 없으므로, 지정·인정행위의 시점에서 현존인이 실연하는 기·예능을 중심으로 원형을 설정하고 보유자를 인정하였다. 따라서 근원적 실체로서 '원형'이 아닌 지정·인정 당시의 보유 기·예능이 '잠정적 원형'으로 설정되면서 '원형보존' 정책이 시행되었다.

원형보존 정책은 '원형'을 보유한 보유자의 전수교육과 전승자 양성을 통하여 시행되었으며, 보유자(보유단체)를 중심으로 한 배타적인 전승환경이 조성되기에 이른다. 그러나 이러한 원형보존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정 당시의 기·예능은 사회적 환경과 수요에 맞게끔 변화가 진행되어 보존하고자 했던 형태적 의미의 '원형'은 보존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형규범은 근대화, 서구화 등 외부환경으로부터 우리 전통문화를 보존하기 위한 사회적 실천의 지침 내지는 지향점을 지닌 시대적 담론이었으며, 무형문화재 보존정책의 당위적 지침으로 정책적 실효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16년 3월 시행될 예정인 무형법은 무형문화재의 변화적 속성을 고려하여 '원형' 대신 '전형'을 도입하였다. '전형'은 무형문화재 주변부의 변화를 인정하여 원형의 경직성을 탈피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법규상 '전형'에 해당하는 고유한 가치, 지식, 기법이 문화재 보존의 지침 또는 원칙에 따라 유지되어야 하므로 전형은 원형과의 단절보다는 관련성과 연장선에서 볼 수도 있다.



I. 검토배경

원형(原形)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는 '원래의 형태', '바뀌기 이전의 모습' 등 물리적으로 고정 불변하는 형태를 말한다. 여기에 무형문화재라는 일종의 전통문화에 해당하는 수식어가 붙는 '문화의 원형'을 검토할 때는 그 의미는 추상성이 더해져 확장성을 갖는다. 지금까지 공감을 얻은 문화의 개념은 ①문화는 학습된다 ②문화는 집단 성원들에게 공유된다 ③문화는 세대에서 세대로 전승된다 ④문화는 통합된 전제로서 존재한다 ⑤문화는 변한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화의 역동적인 측면에서 볼 때 무엇을 '원래의 형태'인 원형으로 판단할 수 있을지 난감해진다. 어떤 문화현상에서 원초적이고 근원적인 형태일 수도 있고, 해당 문화의 실천의 본(本)되는 전형성을 갖는 것일 수 있다.¹ 원형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정리하였다고 쳐도 근원적 형태, 본(本)이 되는 전형성을 갖는 구체적인 형태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학자마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진다.²

이러한 문화의 속성이 자리하고 있는 무형문화재의 경우에 원형이 무형문화재 보호규범으로서 적합한지 그 의문은 지속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형규범은 반세기 동안 문화재보호의 기준 또는 지침으로 무형문화재 보호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여왔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무형법이라 한다)이 시행됨에 따라 이 원형규범은 폐기를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러나 폐기에 앞서 무형문화재 보호규범으로서 원형의 구체적인 적용실태를 살펴보고 그 의미를 분석한 사례는 없었다. 그 동안 진행된 원형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와 다양한 학술상의 관점을 바탕으로 원형을 이해하여 왔다면 이제는 법규화에 따라 원형규범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시행되어왔고 어떠한 규범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원형의 폐기를 위한 명분과 그 대안으로서 채택한 '전형'이 규범으로 작동될 수 있는 요건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은 무형문화재 원형규범의 이행과정 즉, 원형규범의 수용과정과 적용실태를 살피고, 그 이행과정에 있어 원형의 의미를 정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선, 무형문화재 보호규범으로서 원형이 법규화되는 과정과 사회적 수용양상을 검토하고, 무형문화재 지정 및 인정행위에서 원형규범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지정된 종목의 사례를 통해 살필 것이다. 이를 통해 지정 및 인정의 행위과정에서 원형규범의 의미를 짚어본다. 그리고 향후 원형의 대안으로 채택한 전형은 원형과의 어떤 차별성을 지니며, 규범으로서 시행을 앞두고 제기될 수 있는 문제 그리고 필요한 후속조치에 대한 소견을 언급하고자 한다. 이 글의 참고자료는 문화재보호 관련 법령, 문화재위원회 회의자료, 무형문화재 조사보고서 등 정책자료가 중심이며, 관련 학술지와 언론보도자료 등도 함께 살펴볼 것이다.

II. 원형규범의 채택과 수용양상

1. 원형규범의 등장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은 무형문화재 보호규범으로 원형을 규정하지 않다가 1970년 법 개정을 통해 원형규범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당시 여러 신문자료를 참고해보면 원형은 법규화 이전인 1960년대 전반에 걸쳐 규범적 성격으로 통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던 그 해에 진행되었던 무형문화재 지정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신문자료를 살펴보자.³ 이 기사는 당시 무형분과 문화재위원장 임석재교수의 인터뷰를 담고 있다. 여러 마을에

1 배영동, 2005, 「문화콘텐츠 사업에서 문화원형의 개념의 함의와 한계」, 『인문콘텐츠』 제6호, 인문콘텐츠 학회.

2 무형문화재 보호제도와 관련한 원형에 대하여 존재하는 ①실제 상황에서 전승되고 있는 것 ②가장 온전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 ③상대적으로 가장 오래된 것을 원형의 기준으로 설정하면서 특히 ①은 역사성과 현재성 그리고 공동체성을 함께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양명은 ①상대적으로 오랜 역사성 ②형식과 내용의 전통성 ③지역을 기반으로 한 전승성을 갖춘 것으로서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큰 것. 배영동은 ①자연스러운 전승 상황에서 변조되지 않고 이어져 내려온 것 ②개인의 창작력에 의해서 가식과 기교가 가해지지 않는 것 ③오랜 세월 변화가 별로 없이 전해져 내려온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3 경향신문, 1962.10.3, 「국보재지정과 무형문화재」.

서 전승되고 있는 산대놀이뿐만 아니라, 오광대놀이, 강강술래 등도 정통성 파악이 어렵고, 아직도 뭐가 본질적인 것이고 뭐가 원형(原形)인 것인지 낱낱한 상태이다. 농악경연대회에 참가한 농악 중에 어느 것이 가장 전통적인 것인지 확인이 어렵다는 내용이다. 제도 시행의 초창기 무형문화재 지정기준으로 해당 무형문화재 정통성, 원형성을 검토하고 있고 그 근거를 규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무형문화재의 전통성을 확인할 수 없는 사례는 다른 무형문화재 분야에서도 확인된다.⁴ 불교음악인 범패를 발굴하여 국립극장에 공개 시연한 두 개의 불교음악(경산소리, 영남조)중 어느 것이 어산소리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전하고 있다. 또한 무형문화재의 변화 및 서구화에 따른 우리 고유음악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원형보존(原形保存)을 강조하고 그 대안으로서 민속음악의 악보화, 기록화 등의 방법을 제안하는 사례도 있다.⁵

한편, 야외광장에서 연행하던 산대놀이나 탈춤을 공연장에서 연행하기 위하여 연출과정에서 벌어지는 창작행위에 관한 기사도 눈길을 끈다.⁶ 산대놀이의 무대화 과정에서는 ‘근대 무대에 맞도록 정리하고 양식화했으나, 가면의 양식에 있어서 원형성(原形性)을 살리고 있다는 것’, 봉산탈춤의 무대화 과정에서는 봉산탈춤은 전래의 원형(原形)을 보존해야 하는 것이지만 이를 무대 위에 형성할 경우 무대조건에 맞도록 ‘연행공간, 연행시간, 연행방식 등을 연출하는 연출자의 행위는 창작행위이지만, 가면무극의 원형을 간직한 채 무대 위에 형성시키는 일이라는 것이다. 양주별산대놀이는 1964년에, 봉산탈춤은 1967년에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종목이다. 지정된 무형문화재 스스로가 당

시 사회환경에 맞추어 변화시키려는 시도가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시도에 있어서도 원형은 준수해야 할 규범으로 ‘가면무극’을 원형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968년 신설된 민족문화개발위원회의 활동 목적이 전통적 고유예술의 원형을 발굴하고 표준화⁷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의 정책, 민간의 문화활동 영역에 이르기까지 원형은 전통문화 보존의 화두로 자리하고 있다.

원형이 처음 규정된 것은 1970년 문화재보호법 개정이었다. 1970년의 법 개정은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의무화 제도’, ‘시도 무형문화재 지정제도’, ‘무형문화재 기록 작성 의무화’ 등 무형문화재 보호제도의 근간을 담았다. 이 가운데서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제도에 따른 보유자 인정기준을 설정하면서 ‘원형규범’이 자리하게 된다.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1970.12.16. 시행) 제14조(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기준)는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의 예능 또는 기능을 원형대로 정확히 체득 보존하고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로 명시하고 있다. 법 개정의 해설서는 이 조항의 신설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하는 것은 무형의 기능만을 뜻하는 것이므로 그 무형적인 존재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를 인정하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은 현존인에 의하여 그 실연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지정하고자 하는 무형문화재의 기능을 지니고 있는 인간의 현존이 절대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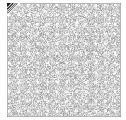
4 경향신문, 1968.5.6, “천년이어 온 찬불가무 사라져가는 원형보존”.

5 동아일보, 1966.6.30, “고고한 겨레의 선율-양악에 쫓긴 민속악보화·정리시급-”.
동아일보, 1967.5.11, “국악현대화운동에 대한 건의”.

6 경향신문, 1968.3.27, “탈춤 산대놀이 무대화”.
경향신문, 1968.6.8, “탈춤의 정수모아 율동과 극과 무대의 조화”.

7 경향신문, 1968.6.12, “민족문화개발위신설”.

8 참고로, 일본의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기준은 원형 규범이 없다. 보유자는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예능을 고도로 구사할 수 있는 자 또는 공예기술을 고도로 체득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요건으로 되는 것이다. …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하는 경우에 반드시 현존인에 의하여 그 무형문화재의 실연가능을 주된 요건으로 하는 것은 보물지정의 경우와 그 지정대상의 형태에 있어서 유형과 무형이 다를 뿐이고 그 원리는 같은 것이다.⁹

요컨대, 무형문화재를 지정할 경우 무형문화재의 기능을 구체화하는 현존인의 존재가 기본 요건이고, 그 현존인은 유형문화재의 국보 혹은 보물과 동일한 것이다. 이러한 등식이 성립할 수 있도록 보유자는 '예능 또는 기능을 원형대로 정확히 취득 보존하고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원형은 변형되기 이전인 완성형의 형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1970년 원형이 법적으로 규범화되면서 원형규범은 전승의 지침으로 적용되기 시작한다. 1971년 제4차 문화재위원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와 관련하여 주관부서의 이관문제(문화공보부 문화과에서 문화재관리국으로)와 이 경연대회가 행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경연에 참가한 다수의 종목 중에 지정가치가 있는 것을 어떻게 '원형보존' 할 것인가? 그리고 기록으로 보존할 것과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육성할 것인가를 논의하면서 '원형보존'의 중요성을 제기한다.¹⁰ 1976년 문화재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사단법인 무형문화재보호협회가 주관했던 '인간문화재 세미나'에서 법에 명시한 대로 보유자와 전수자에게 '원형보존'을 촉구하고, 전수평가를 할 때 문화재위원이 참여하여 '원형'이 변형된 보유자에 대해서는 보유자 인정을 해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지정된 종

목에 대한 최우선적인 보존관리 기준으로 '원형보존'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구전심수(口傳心授)의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의 대안을 마련하고 고령화에 따른 무형문화재 변화 및 훼손에 대비하기 위하여 무형문화재 '원형보존'을 위한 무형문화재 기록화 사업이 추진되었다. 그리고 중요무형문화재 발표공연은 예능 보유자들의 '원형보존' 상태를 점검하고 이수자들의 전수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장으로 활용되었다.¹¹ 이러한 정부차원의 '원형보존론'을 옹호한 대표사례로 성경린(1911~2008)을 들 수 있다. 그는 중요무형문화재 종묘제례악 예능보유자이자 정책자문의 핵심인 문화재위원을 동시에 역임하면서 초창기 무형문화재 보호제도의 기획과 시행에 깊숙이 관여하였다고 추정되는 인물이다. 또한 1968년 대통령의 지시로 전통적 고유예술의 원형을 발굴, 표준화하기 위하여 신설한 민족문화개발연구위원회 음악분과위원¹²이기도 하였다. 문화재관리국의 학술지인 『문화재』의 기고문 「중요무형문화재 보존전승」에서 그는 “문화재보존에 있어서 제일 원칙이 '원형보존'에 있고, 중요무형문화재 기·예능 보유자는 무형문화재의 '원형'을 전수해야 하는 책무를 가지며, 그 '원형'이 잘 전수될 수 있도록 보유자 전수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¹³ 이후 1997년 「문화유산보호현장」 제정과 '원형유지'를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의 기본원칙으로 정한 법 개정에 따라 원형규범은 지금까지 보호의 기준으로 자리하고 있다.

2. 원형규범의 수용양상¹⁴

정부 주도의 전통문화정책에 대한 다양한 주장들도

9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0, 「개정문화재보호법 해설」, pp.17.

10 문화재관리국, 1972, 「제2분과 제4차 회의 회의록(1971.11.11)」, 『문화재』 제6호, pp.193~194.

11 한겨레, 1990.4.7, “판소리, 민요 등 무형문화재 발표회-10일부터 8개 종목 원형보존 점검무대-”.

12 경향신문, 1968.6.12, “민족문화개발위신설”.

13 성경린, 1982, 「중요무형문화재 보존전승」, 『문화재』 15호, 문화재관리국, pp.1~6.

14 공예기술 분야에 대한 원형보존 인식을 살펴볼 만한 자료를 아직은 찾지 못해 제시하지 못하였다. 건축물, 석조물 등 유형문화재에 대한 복원, 보수, 수리과정에서의 원형보존 문제가 많이 거론된 편인데, 공예기술과의 연관성 보다는 해당 문화재의 외형에 치중되어 있는 편이다.

원형규범의 수용양상을 살피는데 참고가 된다. 1980년대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의 산실로 인식되었던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대한 논쟁을 보자. 임석재는 민속경연대회가 회를 거듭함에 따라 발굴 보존 육성과는 달리 수상을 목표로 삼는 경연대회로 변하여, 연회자의 오색찬란한 의복, 필요 이상의 인원동원, 고등학교 학생의 대연, 직업예능인의 고용 및 출연 등 전승된 민속예술이 내포하고 있는 특이성과 흥취(興趣)와 멋을 올바르게 연회하지 못하고 걸치레의 형해연회(形骸演會)가 되게 했다고 지적한다. 나아가 민속대회를 통해 과거 살아있는 민속예술을 오늘날에 그대로 재연시켜놓으면 지난날과 같이 동질적인 의의와 기능과 멋과 흥취가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며, 민중 속에 살아있는 문화유산을 지난날의 문화유산으로 곡해하지 말고, 편파적이고 협소한 대회행사를 지양해야 할 것임을 주장한다.¹⁵ 그러나 정병호는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를 다르게 평가하고 있다. 그는 민속경연대회가 갖는 속성 즉 참가하는 민속예술이 가무극희(歌舞劇戲)를 잘 아는 예술이론가의 지도에 의해 꾸며지고 재구성된 것임을 부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농경문화, 혈연공동체(씨족부락) 등 전통문화의 물질 토대가 붕괴된 현 상황에서 대회참가예술이 실생활에서 우리나라 '원형'이 아니라 재구성(가공)한 것이어서 '원형'의 변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이는 민속예술이 생활 속에 살아있을 때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이상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그리고 총체성을 지닌 민속예술이 분화예술로 가는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민속경연대회가 놀이, 연극, 무용, 음악, 민요분야로 나누어 심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¹⁶ 채희완은 「전통연회의 창조적 계승문제」에서 삶의 현장과 지역민과 동떨어진 민속연회의 전승실태를 지적하면서, 전통적인 문화유산이 박제되어 전승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가치를 담아 새롭게 전승 발전하는

살아있는 문화유산으로 전승되어야함을 강조하고 있다.¹⁷ 임석재와 채희완은 변화와 창조라는 문화의 개념에 입각하여 원형규범이 문화의 탈맥락화를 가속화시키고 있음을 비판하고 있는 듯 하다. 반면, 정병호는 당대의 전통문화현실은 탈맥락화를 피해갈 수 없으므로 문화의 단절과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원형규범의 적용은 일면 타당한 것으로 이해하는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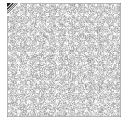
원형보존과 창조적 계승이 양립할 수 있다는 중도적이고 개량적 입장도 표명되었다. 전통음악 분야의 권위자이며 그 당시 무형문화재 전문위원으로 활동하였던 이보형의 기고문이 좋은 예이다. 그대로 인용해 본다.

『전환기의 한국 문화예술』이라는 심포지엄이 문화예술진흥원에서 벌어졌는데 이 자리에서 어느 분이 무형문화재를 두고 이런 말을 했다. ... 구태여 우리나라에서 무형의 문화유산을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하는 이유가 무엇이나 하는 질문을 던지었다. 그리고 문화는 계속 발전되고 변형되기 마련인데 전통문화를 문화재로 지정하여 원형대로 공연하도록 붙잡아둬으로써 기를 못 펴게 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그러니 중요무형문화재 기·예능 보유자도 원형고수에 집착하지 말고 마음대로 공연하고 창작하도록 방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행사뿐만 아니고 다른 행사에서도 이런 질문이 심심치 않게 튀어나오고 있는데 당국이나 문화재위원회에서는 별 말이 없는 것 같다. 내 소견은 이렇다. ... 많은 사람들이 중요무형문화재 기·예능 보유자 즉 속칭 인간문화재는 그들의 기·예능 공연 시에는 반드시 원형고수를 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변형된 공연을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 같다. 내 소견은 다르다. 우리문화는 계속 발전되어온 만큼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종목도 발전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니 중요무형문화재 기·예능 보유자도 그 기·

15 임석재, 1982,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앞으로의 방향」 『문예진흥』 84, 한국문화예술진흥원, pp.122~125.

16 정병호, 1988,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의 개선방안-민속놀이와 민속무용을 중심으로-」 『한국민속학』 제21호, 민속학회, pp.305~308.

17 채희완, 1988, 「전통연회의 창조적 계승문제」 『한국의 민속예술』, 문학과 지성사, pp.39~52.



예능을 발전시키는 행위를 할 수 있고 여기에 기·예능의 변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중요무형문화재가 문화의 특성상 보존에 있는 만큼 그 기·예능을 전수생에게 전수할 때, 중요무형문화재 발표공연이라는 이름으로 공연할 때는 반드시 지정 당시의 특성을 지켜야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는 원형고수를 반드시 해야 하고 이것을 문화재관리국이 관리해야 하며, 따로 창조행위는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창조행위는 문화재관리국에서 관리할 소관이 아니라 문화공보부 문화과의 소관이다.¹⁸

요컨대, 원형은 구체적으로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당시 실현했던 기·예능을 말한다. 중요무형문화재 기·예능 보유자는 지정 당시의 기·예능을 제자들을 위한 전수교육과 일반인을 위한 공개행사를 진행할 때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 그 외에 창작행위에 대해서는 방임해도 무관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중요무형문화재의 원형을 지정당시의 기·예능으로 설정했을 경우 전승논란이 가중될 수도 있다. 그 예로 안성남사당놀이의 전통성 시비를 들 수 있다. 1989년 전국민속경연대회에서 원형복원에 성공했다는 이유로 대통령상을 받은 '안성남사당풍물놀이'의 공연 형식이 1980년 중요무형문화재 제3호로 지정된 '민속극회 남사당(현 남사당놀이보존회)'의 원형과는 상당부분 다르다는 것이다.¹⁹ 1988년 중요무형문화재 제3호 '민속극회 남사당(현 남사당놀이보존회)'은 원형보존의 공을 인정, 정부가 이미 '민속극회 남사당'을 안성 남사당의 표본으로 인정했는데도 똑같은 이름을 빈 다른 형식을 남사당의 '원형'에 가까운 것으로 다시 공인한 것은 심사위원들의 실수이거나 정부의 민속문화 보존정책의 무원칙을 드러내는 처사라고 비난하였다. 안성남사당 풍물놀이가 '원형'과 다르다는 증거로 ①전혀 다른 가락 ②안성남사당의 무동은 3무동과 5무동이 원칙인데 7무동을 태운 점 ③무동 태우기를 힘겨루기 운동경기로 전락

시킨 점 ④상모의 형태 변화 ⑤구성원의 변화 ⑥전승계보의 문제 등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심사위원장 임동권은 안성남사당 풍물놀이는 '원형복원'이 잘됐고 놀이가 짜임새 있게 잘 진행되었으며 7무동은 출연자들이 당시 그렇게 했다고 하니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임재해는 무형문화재는 순간적인 동작으로 이어지고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때에 따라 다르므로 '원형'이란 게 사실 있을 수 없는데도 심사위원들이 정확한 증거 틀도 없이 원형을 심사 기준으로 내세운 것은 신중하지 못한 처사라고 지적하면서 민속극회 남사당 쪽의 전통성 주장은 남사당의 맥을 이어온 사람들로서 남사당에 대한 애정으로 봐줘야 하며, 안성남사당 보존회 쪽의 남사당 복원의지도 순수한 이상 정부가 원칙없는 공인형식을 통해 민속예술계의 잡음을 조장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형논란에 대한 임동권의 답변은 원형에 대한 주관적이고 자의적 해석이 논란의 중심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원형의 객관적 검증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정 당시 기·예능을 '원형'으로 인식함으로써 배타적 전승환경을 조장하는 원형의 역기능을 보여준다.

그 동안 원형에 대한 논란이 거듭됨에도 불구하고 정부차원에서 논의의 장을 마련한 것은 없었다. 그러나 2005년 제기된 종묘제례악의 원형논란이 이슈화되면서 원형규범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다. 현 종묘제례악은 일제강점기에 훼손되었고 그 후 창작된 것을 지정한 것으로 원형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비단 종묘제례악만이 아니라 이전에도 살풀이춤의 춤 장단에 관한 원형논란이 있었다. 정부는 이들 각각의 원형논란을 대처해나면서 동시에 중요무형문화재 전반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다. 2006년 문화재청은 「중요무형문화재 원형보존과 재창조 가이드라인」 학술용역을 추진하여 음악분야에 대한 '원형찾기'에 나선 적이 있다. 이 연구의 추진배경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첫째, 법규상 전승기본원칙인 '원형보존'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정 당시를

18 이보형, 1987, 「중요무형문화재와 창작자와 관계」, 『월간춤』 12월호, pp.58~59.

19 한겨레신문, 1989.10.15. "안성남사당 전통성 시비".

문화원형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정의(기준)가 없어 원형왜곡 논란이 제기되고, 둘째, 2003년 국제규범으로 채택된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은 '무형문화유산'을 공동체 및 집단의 환경에 대한 대응과 자연·역사와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끊임없이 재창조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점, 셋째, 따라서 중요무형문화재의 원형보존과 창조적 계승을 위한 체계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승자가 계승해야 할 기·예능과 재창조 가능한 범위를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원형시비 논쟁을 방지하고, 넷째, 법상의 원형의 개념 및 분야별 원형기준을 정립하여 현대의 문화 환경에 적합한 분야별 계승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해당 무형문화재의 원형과 창작행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전승행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으로 그 방점은 원형의 구체화와 원형보존에 있었다.

이 연구에서 찾otta자 했던 원형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떠한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로서는 원형의 실체는 확인불가능하고, 원형의 실체 규명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데 그쳤다. 다만, 무형문화재 전승자는 자신들이 스승 또는 보유자로부터 사사한 기·예능을 원형으로 인식하고 종목 지정 당시의 보고서 및 자료, 보유자의 음반 및 영상자료, 전승계보 및 문헌자료 등을 원형의 근거로 삼고 있음을 설문조사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²⁰ 또한 지정 당시를 원형으로 설정하는 경우에도 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에 따른 각색 및 연출 등 인위적인 창작이 가해졌다는 것을 피할 수 없으므로 모든 종목에 대해 지정 당시의 것을 원형으로 설정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라 무형문화재의 원형 찾기 사업은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 중단되었다.

한편,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은 원형의 적용문제와 함께 무형문화재 보호방식의 개선에 상당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전통지식 및 생활관습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무형문화재 정의와 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세대 간 전승, 공동체 및 집단의 자발적 참여, 유산간 상호작용과 재창조, 정체성 및 지속성, 문화적 다양성, 인류의 창조성 등 무형유산 보호조치를 위한 다양한 가치와 전승원리를 담고있다. 이러한 국제규범의 확산에 따라 그 동안 무형문화재 보호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원형규범을 폐기하고 다양한 진흥정책을 담은 무형법을 제정하였으며, 2016년 3월 시행될 예정이다.

Ⅲ. 지정·인정 행위에 있어서 원형규범의 적용실태

이번 장에서는 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과정에서 원형규범이 적용되고 있는지, 적용되고 있다면 원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이다. 지정된 종목 중에서 그동안 원형보존의 의미를 비교적 확인할 수가 없었던 공예 기술 종목이 대상이다. 그 중에서도 원형보존 논의와 관련성이 있는 문화재수리기능과 관련된 종목²¹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지정 및 인정행위에서 보호규범의 적용실태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료는 무형문화재 지정과 보유자 인정 검토를 위해 작성한 「무형문화재 조사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는 조사대상 종목의 역사적, 예술적, 학술성 가치 판단과 해당 종목의 실연 과정을 통한 전승자의 기량평가와 전승이력 그리고 조사자의 의견 등 많은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조사보고서 내용을 훼손하지 않는 수준에서 종목 지정과 보유자 인정에 관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원형규범의 적용실태 및 의미를 살펴본다.

20 중앙대학교 한국문화유산연구소, 2006, 「중요무형문화재 원형보존과 재창조 가이드라인」.

2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2항: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종류 및 업무 범위와 관련하여 목수, 석공, 화공, 번와와공, 조각공, 칠공, 표구공과 관련한 중요무형문화재를 검토한다.



〈사례 1〉 「배첩장」 종목지정 및 보유자 인정²²

배첩장은 1995년 11월 관계전문가 3인이 조사를 진행하고 이듬해인 1996년 3월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보유자를 인정하였다.

-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검토 : 배첩장은 중국의 한(漢)대에서 기원하였다. 중국의 영향으로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풍미했던 서화처리 기법이다. 일제강점기 일본 표구기술 유입에 따라 전통기술이 단절되고 전승이 약화되었다. 근대에 이르러 일시적 수요에 대응하는 표구 기술자 양성으로 전통장황문화의 회복에 애로가 있고, 문화재수리기능인 지정을 통해 명맥 유지되고 있다. 이 분야에 대한 현재의 학술연구는 미진하지만, 장황문화의 회복을 위한 연구 가치는 충분하며, 배첩은 서화 등의 예술적 가치를 높이는 전통기술이다. 장황문화의 회복과 발전을 위하여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의 필요성이 있다.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검토 : 전승계보 및 기능형상과정, 제작기법과 기능수준, 공방시설 및 규모, 전승상황 및 전승방안 등의 평가항목을 통하여 검토하고 있다. 전승계보, 다수의 문화재급 고서화처리 경력 등이 중시되었다. 문화재위원회는 보유자에 대하여 '죽자와 고서화 처리 등 지류문화재 천여 점을 처리하는 등 한국 전통장황(표구)기능의 심오한 경지에 이른 자로 한국 최고의 장황(표구)장이라 할 수 있으며, 전승 상태가 양호하고 전승의지나 전승방안도 확고함'을 인용하여 배첩장의 종목 지정과 보유자 인정을 검토하였다.

〈사례 2〉 「번와장」 종목지정 및 보유자 인정²³

번와장은 2008년 7월 관계전문가 6인이 조사를 진행하고 그해 10월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요무형문화재

로 지정하고 보유자를 인정하였다.

-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검토 : 번와와공은 건축물에 기와가 사용된 당시부터 존재하였다. 조선전기 경국대전 공전조, 영건의례를 비롯한 조선 후기 기록에 의하면, 번와와공은 조선 초부터 독자적인 영역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역사적 가치가 높다. 지붕공사는 목공사와 버금갈 정도로 복잡한 공정이 기와지붕 안에 숨어 있으므로 정확하고 세부적인 공정의 체계화와 동시에 현장에서 정형화된 틀 보다는 서로 조화롭게 즉흥적으로 해결해야 할 여지가 많기 때문에 학술적인 정리의 필요성이 있다. 주변 자연환경을 닮아 의장적으로도 가장 친환경적이라는 전통건축의 지붕곡선을 법식에 따른 정연한 틀 속에서도 자신만의 예술성을 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술적 가치가 높다.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검토 : 전승계보, 재료 및 작업도구 구비현황, 원형재현능력, 기량의 성숙도, 이론적 측면에서의 이해도, 경력, 자질 및 건강, 전승 상태와 향후 전승방안 등 다양한 평가항목을 통하여 검토하고 있다. 그 중에 전통기법, 전승계보, 문화재급 보수경력을 중요시하였다. 문화재위원회는 번와장 분야는 전통건축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역사성, 학술성 및 소멸우려가 있으므로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한다고 하였다. 보유자는 전승계보가 명확하고 전통적인 번와기법을 보존 전승하고 있어 보유자로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보유자 인정 사유를 밝히고 있다.

〈사례 3〉 「단청장」 보유자 인정²⁴

단청장은 1972년 8월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종목을 지정하면서 김갑병(1900~1975), 이치호(1910~2006), 원덕문(1913~1992)을 보유자로 인정하였고,

22 문화재관리국, 1995, 「무형문화재 공예종목발굴기능조사 연구보고서」 제222호.

23 문화재청, 2008, 「무형문화재 조사보고서」 제291호.

24 문화재청, 2008, 앞의 책.

1992년에는 김성수(1905~1998)를 보유자로 추가 인정하였다. 2006년 단청장 내의 불화 기능을 분리하여 불화장을 별도로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하였다. 그후 2008년 단청장 보유자 추가 인정조사를 실시하고 보유자를 인정하였다.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검토 : 전승계보, 출초능력, 채색능력, 재료사용 등의 평가항목을 통하여 검토하였다. 단청의 예술적 표현능력은 기량뿐만 아니라 전승계보를 중요시하고 있다.

(홍○○) 만봉스님의 문하생으로 서울, 경기지역 만봉스님의 선호 색상인 붉은색을 선호하고 세필 먹선을 잘 그려낸다. / 창망머리초의 출초를 무난히 수행하고, 부재에 채색하는 능숙한 묘필의 기법이 보인다. 만봉스님의 독특한 단청문양요소를 충실히 계승하고 있다. / 만봉스님이 잘 그리던 기법대로 황색 석류 등은 크게 하고 나근 등도 크게 하는 기법을 그대로 이어서 한다. 만봉스님의 붉은색 계통 선호가 뚜렷하다. 뒷목 쪽은 그런 직회에 민주점을 찍은 것은 전통기법대로 한다. / 만봉스님이 주로 한 머리초로 짜임새 있게 출초하고, 채색배열이 적절하다. 마무리 단계의 먹계화 희분은 필력 있는 필선을 보여준다.

(유○○) 안정된 채화기법, 장식묘사에 창의성, 묘필의 운영도 완숙한 경지에 이르렀다. 조선후기 사찰화원의 계맥을 정통적으로 계승하였고, 능필의 채화기법이 인정된다. / 녹색선호의 혜각스님 영향이 뚜렷하다. 휘색은 장, 삼, 황, 녹, 석의 5섯가지 전통기법의 순서대로 장식한다. / 출초의 숙련된 필력, 혜각스님이 많이 사용한 금단청 머리초를 잘 살린다. 중요한 마무리 단계인 먹기화 시분도 힘있게 잘 되었다.

〈사례 4〉 '석장' 종목지정 및 보유자 인정²⁵

석장은 2007년 3월~4월까지 관계전문가 3인이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을 검토하고, 4인이 보유자 인정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해 9월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요무형문화

재로 지정하고, 보유자를 인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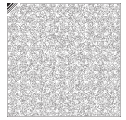
-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검토 : 한국 석조물의 역사는 삼국기로 올라가며, 각 시대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조형미술품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석조물의 역사적이고 기술적인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오늘날 석재를 다루는 일이 힘겹기 때문에 석조 조각이나 석조물 시설자(드잡이공) 등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어느 지방은 전무한 실정이다. 우리 문화유산의 대부분이 석조물이고 이를 보존해야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고 석조물 조상과 건조의 정통적인 맥이 이어지지 않으면 앞으로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것은 당연하다. 이에 석조물 조성의 보존과 장려, 석공들의 예술의 맥을 잇기 위해서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이 필요하다.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검토 : 전승자 경력, 특기분야, 전승계보, 원형재현능력, 기량의 성숙도, 이론적 측면의 이해도, 완성품의 예술성, 조형성, 문화재재현능력 등의 평가항목을 통해 검토하였다. 문화재급 석조물과 비교하여 조형성, 예술성을 얼마나 있는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정도를 중요시하고 있다.

(이○○) 석재의 성질과 특성은 물론 구조적인 면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이론 배경을 소유하고 있다. / 전통적인 축성법의 전형을 유적별, 지역별로 잘 파악하여 원형유지와 보수, 복원에 남다른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상당기간 후에도 초기 시공의 하자가 없는 이 분야의 독보적인 기량을 가지고 있다

(이○○) 이세욱-김맹주-김진영에 이르는 석장계보를 잇고 있다. 조형성이나 질감에서 한국의 전통성을 표현하고 석질의 특성에 따라 가공기법을 달리는 기술을 보유했다. 문화재 보수공사 경험이 풍부하여 충분한 원형재현 능력이 있다. 수공도구를 사용함으로써 조형성이나 질감에서 한국의 전통성을 엿볼 수 있다. 전통적인 표현능력을 지니고 있어 문화재 재현능력도 지니고 있다.

25 문화재청, 2007.5, 「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 제289호.



〈사례 5〉 「제와장」 종목지정 및 보유자 인정²⁶

제와장은 1988년 관계전문가 2인의 조사를 거쳐 그해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보유자를 인정하였다.

-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검토 : 수천년 동안 기와를 사용하고 만들어 왔지만, 제와에 대한 이론의 체계와 제와술에 관한 전수내용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다. 다만 구전과 작업과정을 통해서 오늘날 기와는 만들어지고 있다. 기와의 강도, 내구력, 동파현상에 대해서 그 해결책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러한 기와품질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제와기술자의 보호와 육성, 이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여, 전통의 기법을 전수시킬 수 있게 해야 한다.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검토 : 전통적인 제와시설과 전통적인 제와제작기법 등의 평가항목을 통하여 검토하였다.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공장시설과 전승계보(가계전승)를 중심으로 한 제와기법이 전통적임을 중시하고 있다.

〈사례 6〉 「목조각장」 보유자 인정²⁷

목조각장은 1996년 12월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박찬수를 보유자로 인정하였다. 그 이후 2000년 4월에 관계전문가 3인이 추가 보유자 인정조사를 실시하고 보유자를 인정하였다.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검토 : 표현력, 칼놀림, 창의성 및 응용력, 전승계보 등의 평가항목을 통하여 검토하고 있다.

(허○○) 30년에 이르는 경력과 확실한 전승계보, 적절한 칼의 구사와 높은 수준의 손놀림, 다양한 장르를 소화해내는 창의력과 응용력, 전통제작기법을 완전하게 구사하고 이해하고 있다.

(전○○) 뛰어난 솜씨로 종교적 이상미를 세련된 안목으로 표출한다. 전체의 비례는 물론 두상의 표현이 온화하고 풍부한 표정을 지니고 있어 기능뿐만 아니라 고전양식의 창의적 구현에 어느 정도 진전을 보인다. 사용하는 조각칼이 제한적이지만 칼의 손놀림과 솜씨는 상당한 수준이다.

〈사례 7〉 「칠장」 종목 지정 및 보유자 인정²⁸

칠장은 2000년 4월과 10월 관계전문가 3인의 조사와 이듬해 3월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보유자를 인정하였다. 지정조사를 진행할 당시에는 옷칠 정제장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가 칠장으로 지정명칭이 정해졌다.

-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검토 : 한국의 칠기문화는 주로 나전칠기 위주로 발달하여 조선시대까지 문화유산으로서 꽃을 피웠으나, 값싼 카슈칠의 공급과 생활용품의 대량생산에 따라 칠기생산의 여건이 크게 악화되었으므로 옷칠공예의 발전을 위해 정제칠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옷칠업 종사자들은 정제기술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작품제작에 중심을 두어 정제업을 외면한 것이 현실이다. 최상품의 칠공예품은 양질의 정제칠 없이는 성립될 수 없으므로 정제장 지정에 따른 한국 전통옷칠의 보존과 발전, 수요공급의 활성화와 칠예 인구의 저변확대 및 교육적 기대효과도 크다.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검토 : 정제기술에 대한 전통적 기법 보유와 현대화 접목성, 전승계보, 칠공예분야의 역할과 향후 보호육성 가능성 등의 평가항목을 통하여 검토하고 있다. 정○○는 초등학교 졸업 후 나전칠기 제작기술을 배우기 시작하여 고 심부길과 고 김태씨를 사사하였다. 세계적으로 양질의 칠로 평가받는 원주

26 문화재관리국, 1988, 「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 제178호.

27 문화재청, 2000.11, 「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 제263호.

28 문화재청, 2000.11, 앞의 책.

산 생칠을 가지고 옛 정제기법인 교반법으로 만들어진 교반칠에 칠분을 넣어 만든 흑칠과 교반칠에 특정 기름을 넣어 만드는 투명칠은 오래전부터 정평이 나있는 정제칠이다. 양질의 일본산 흑칠과 투명칠을 정수화의 것과 비교해본 결과 훨씬 우수하다. 옷칠의 기본 소재인 생칠의 정제기법의 재현과 고품질 개발에 선구적이고 주도적인 역할로 칠공예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정수화씨의 정제법과 기술을 국가적으로 보호·육성할 필요성이 있다.

〈사례 8〉 「대목장」 보유자 인정²⁹

대목장은 1982년 6월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하였다. 종목을 지정하던 해에 배희한(1908~1997), 이광규(1918~1985)를 보유자로 인정하였고, 1991년 신응수, 1997년 고택영(1914~2004)을 보유자로 추가 인정하였다. 그후 2000년 보유자 추가 인정조사를 실시하였다.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검토 : 전승자의 이력, 전승계보, 고건축경력, 자질 및 인품정도, 공방의 위치 및 규모, 도구명칭, 전통적인 도구 여부, 제작방법의 전통적인 기법 여부, 사회적 수요 등의 평가항목을 통하여 검토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전승계보, 전통건축기법 보유 및 전수여부, 건축경력, 전승의지 등을 중요시하고 있다.

(전○○)우리나라 대목 조직의 계통이 서울, 경기, 호남에서만 확인되고 있는 현실에서 대목 김덕희, 김종희의 맥을 연구하는데 있어 한 획을 그을 만한 대목장이다. 1956년 김종희 문하생에서 지금까지 40여년을 오직 목수로 궁궐 및 사원건물의 보수와 신축을 통해 전통건축기법을 전수받고 그 맥을 이어온 장인이다. 목조건물의 특징인 꺾음, 안쭈림, 처마양곡(仰曲)등을 잡는 것은 건물의 규모와 처마높이 등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하는데 이런 기법에 대하여 기존의 건물에서 익히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면서 새로운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고 있다.

(최○○) 1960년대 전통건축 활동에 입문한 이래 김종희 도편수로부터 고건축의 기법을 전수받아 궁궐 및 사원건물의 보수와 사원건물의 신축을 하며 후계자 양성에도 전력하고 있다. 경력이나 작품내용으로 볼 때 전통건축 기법이 몸에 배어있는 대목으로 인정되며 특히 설계도를 직접 작성하여 건물을 세울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다. 기둥의 치목에 있어서도 두 가지 유형인 민흘림과 배흘림형을 숙지하고 시대별 양식에 따라 정교하게 제작하여 재현하고 있다.

이상 공예기술 분야의 8개 종목을 대상으로 지정·인정의 조사과정에서 원형규범이 어떻게 검토되고 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검토 종목 중 원형이 적용된 사례는 번와장, 석장 등 2종목이다. 원형재현능력이란 평가항목인데, 번와장은 이를 전통기법의 보유여부로 판단하고자 하였으며, 그 전통기법은 기와공사의 공정과 함께 지붕의 조형성, 자연친화적인 경관성 등 외부 표현미를 중심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석장의 경우는 문화재의 조형미를 있는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문화재 재현능력의 평가항목과 동일해 보이며, 이 두 항목을 통해 전통기법의 보유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였다. 이외에 다른 종목은 보유자 인정기준을 검토하기 위하여 다양한 평가항목을 활용하였다. 전승이력, 전승계보, 재료 및 작업도구 구비현황, 전통적인 도구여부, 제작방법의 전통적인 기법여부, 기량의 성숙도, 이론적 측면의 이해도, 완성품의 예술성, 조형성, 문화재 재현능력, 전승경력, 자질 및 건강, 전승 상태와 향후 전승방안, 사회적 수요 등 전승자의 기능실연과 전승환경에 이르기까지 여러 평가항목을 적용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항목이 종목마다 조사자마다 적용의 편차가 있고 조사자의 재량으로 진행된 이유는 원형의 개념과 구체적인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 법 규정 때문일 것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승계보, 전통기법의 보유여부, 표현력 등의 평가항목을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고, 이를 보유자 인정기준인 '원형대로 체득보존하고 그대로 실현하는자'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공예기술 종목의 핵심사항인 전통기법, 전통기술 등 기술적인 측면을 검토하면서 그 제작과정은 현지조사를 통해 제시하고 있으나 전통성의 근거가 되는 전통기법의 실제 즉, 어느 시기, 어느 전통기술을 원형으로 설정하고 이 기술과 비교하여 검토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둘째, 따라서 제작 또는 표현하고자 하는 문화재의 표현미, 문화재 재현정도, 전승계보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조사시점에서 전승자가 실현하는 기능을 원형 또는 전통기법·기술로 설정하고 있는 듯하다. 원형 또는 전통은 통시적인 관점인데, 여기에 현재와 그 현재를 중심으로 검증 가능한 가까운 과거를 포함하는 다소 폭넓은 공시적 관점을 취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무형문화재가 구전으로 내려오는 전승의 특성상 과거의 실연양상을 현재의 연구성과로는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위에서 예시한 종목에서 볼 수 있듯이, 조선시대 도화서에 배첩장이 배속되어있다는 기록만 전할 뿐, 그 당시 배첩장의 기능과 수준을 알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경주 천마총에서 출토된 주칠화중형배에서 흑칠과 주칠의 흔적을 통해 칠정제법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칠을 정제하는 방법은 알려진 바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도 운영상 무형문화재의 기능을 구현하는 사람을 지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현재를 중심으로 확인 가능한 과거를 기준으로 한 전승양상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현재 실연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구전과 기록자료 등에 근거하여 무형문화재를 실체화하고 거기에 전통성과 원형성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대 간 전승의 근거를 전승계보를 중심으로 확인하고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셋째, 위 둘째 항과 관련하여 조사시점의 기·예능을 완성형 보다는 진행형의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우선 우리의 무형문화재 처지를 과거의 일제강점기, 오늘날의 산업화·

서구화 등에 따른 단절, 변화, 훼손의 경로를 거쳐 위태로운 상황으로 인식한다. 이에 전통기술과 기법의 맥을 가깝스로 있고 있는 무형문화재 전승자를 발굴하여 해당 무형문화재가 계승·발전하는 최소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종 목지정과 보유자 인정의 필요성을 인식한다. 따라서 조사시점에서 보유자 인정대상자로 추천받은 전승자는 원형의 형태, 바뀌기 이전의 기량과 지식을 보유한 해당 무형문화재의 '완성자'가 아니라 무형문화재 기·예능의 고도화를 위해 매진해야 할 '계승자'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은 비단 공예기술 분야에만 한정되지 않을 것이다.

IV. 원형규범의 의미와 그 대안으로서 '전형'

1. 원형규범의 의미

지금까지 살펴본 원형규범의 채택과 수용양상, 지정인정 행위에서 원형규범의 적용실태, 무형문화재의 원형규명 연구 등을 토대로 원형규범의 의미를 정리해본다.

첫째, 법규상 원형의 의미는 문자 그대로 무형문화재를 실현하는 어떤 구체적인 '형태'를 말한다. 이는 무형문화재의 기능을 구체화하는 현존인의 존재를 기본요건으로 설정한 보유자 인정 의무화제도의 시행과 맥을 같이한다. 따라서 보유자 인정기준이 되는 '기·예능을 원형대로 체득한 자'에서 '원형'은 현존인에 의해 실현되는 어떤 형태를 말한다.

둘째, 이러한 실체로서의 원형을 지정 및 인정행위에 적용했을 경우이다. 법은 무형문화재를 '역사성, 학술성, 예술적 가치가 큰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무형문화재는 통시성과 공시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지정 및 인정행위는 이 둘을 모두 충족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게 된다. 통시적 측면은 어느 시기의 기·예능을 원형으로 보느냐이다. 공시적 측면은 여러 집단, 여러 공동체에서 전승하고 있는 것 중 어느 것이 가장 원형이고 정통성이 있는가, 하나의 집단 또는 공동체가 전승하고 있을 경우 얼마나 원형

을 실현할 수 있느냐이다. 그러나 구전성이 강한 무형문화재³⁰ 전승의 특성상, 원형을 검증할 수 있는 비교대상이 되는 원형의 실체를 확인할 길이 없다. 조사과정에서 원형의 적용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통시적인 측면은 역사적 근거를 찾는 것에 그쳤고, 무형문화재의 구체적인 형태는 현존인이 실현하는 공시적인 측면이 부각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제도의 입장에서 무형문화재의 원형은 ‘무형문화재의 지정·인정 당시에 실현한 기·예능’을 의미하게 되었다.

셋째, 지정·인정 이후 보존관리의 측면에서 원형은 지정·인정 당시의 기·예능을 원형으로 설정하고 그 원형의 ‘보존’을 강조한다. 앞서 살펴본 지정·인정의 행위에서 본 원형은 원래의 형태로 가기 위한 ‘진행형’의 관점이었다. 그러나 지정 이후 보존관리 상의 원형은 지정 당시의 기·예능을 ‘원래의 형태’인 원형으로 설정함으로써 무형문화재 제도의 핵심인 전수교육과 전승자 양성의 표본 또는 준거가 되었다. 따라서 원형규범은 ‘보유자 중심의 전수교육’과 ‘위계적 전승구조’를 구축하는 기본원리로 작동하였다. 그 결과 지정된 종목을 중심으로 한 위계성, 유일성, 배타성의 전승환경이 만들어졌으며, ‘독점’, ‘폐쇄성’, ‘고착성’, ‘권력화’로 표현되는 부정적인 기능을 양산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원형보존 정책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지정 당시의 기·예능뿐만 아니라 그 사회문화적 기능이 변화하는 등 원형보존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³¹

넷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측면에서 원형규범은 과도한 훼손과 변화를 막고 전통문화의 정체성, 고유성을 유지하기 위한 보호의 지침 또는 지향의 의미를 가지며 무형문화재 보호의 성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2. 원형규범의 대안 ‘전형’

2016년 3월이면 현행 문화재보호법에서 무형문화재 분야를 분리한 무형법이 시행된다. 무형법은 무형문화재 보호의 기본원칙으로 원형을 폐기하고, 전형을 도입한다. 무형법 제정을 위한 법제연구³²에서 원형은 외국의 입법사례에서 찾아볼 수 없고, 무형문화재의 박제화를 방지하는 방편으로 원형유지의 발전적 대안으로서 무형문화재의 변화적 속성을 반영한 ‘전형’ 또는 ‘전범’을 제한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 ‘전형’의 개념을 보다 구체화하여 무형문화재 보존정책에 도입할 필요성을 제기한 학술연구도 있다. ‘원형’ 대신 ‘전형’을 도입해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어떤 부류의 본질적 특색을 나타내는 틀’이라는 사전적인 정의를 갖는 전형(典型, typifier)이 특정 시기의 한 형태만을 규정하는 원형의 개념과는 달리 무형유산의 속성인 순간성과 공간성 그리고 변화의 속성인 내발적 역동성을 모두 포괄할 수 있다. ... 원형의 개념은 원래 유일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전형은 동일한 원리가 반복 적용될 때 발생하는 내부적인 변화를 인정하는 개념이다. ... 전형은 표현된 ‘형태’보다는 그 형태를 창출하는 ‘원리’에 중심을 두는 개념이다.³³

새롭게 제정된 무형법은 이러한 표현 또는 형태를 창출하는 ‘원리’에 입각하여 ‘전형’을 ‘해당 무형문화재의 가치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특징’으로 규정하고, ‘해당 무형문화재를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하는데 구현되고 유지되어야 하는 고유한 가치, 기법 또는 지식’으로 정의했다. 그러나 원형을 대체하는 규범용어 치고는 추상적인 개념에 가깝다. 개념의 추상성을 문제 삼는 것은 주관성의 개입으로 원형

30 무형문화재 중 궁중정재 분야에 악학계법, 의례 류 등의 관련 문헌이 존재한다. 그러나 그 근거만으로 원형대로 재현할 수 없다.

31 이에 대하여 한양명의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한양명, 2006, 「중요무형문화재 예능분야의 원형과 전승문제에 대한 반성적 검토」 『한국민속학』 44집, pp.561~594.

32 문화재청, 2011,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연구」,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33 송준, 2009, 「한국 무형문화재정책의 현황과 발전방안」,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96.



의 문제점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전형의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허용호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전형이 무엇인가 하는 점은 여전히 모호하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추론되는 것이기에 그러하다. ... '원리'는 변하는 것인가 아닌가? 그 원리의 가변성이 인정되는 것인가? 필자의 판단으로는 그 원리는 변치 않는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그것은 원형과 전혀 다른 것이라기보다는 또 다른 얼굴을 한 원형일 수 있다. ... 사소하고 주변적이고 중요하지 않는 변화는 인정하지만, 중요하고 핵심적인 원리는 여전히 철칙화 시키고 절대화 시킬 여지가 다분한 것이다. 더욱이 그것이 추론되는 것임을 염두해 둘 때 당연하게 나타나는 주관성 역시, 무형법 운영에 장애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 '전형'이라는 것이 무형유산의 보전과 진흥의 기준이 되고, 무형문화재 지정이나 인간문화재 지정의 평가기준이 되었을 때, 그것은 고정되고 고착될 수밖에 없다.³⁴

무형법의 장애가 될 것으로 우려하는 문제는 크게 '전형의 추상성'과 '전형의 고착성'이다. 이 두 가지 문제는 서로 연관성을 가지며 원형이 갖는 문제와 동일하다. 세대 간 전승되어온 무형의 문화적 소산인 '무형문화재'의 전형을 어떻게 특정화할 것인가, 전승의 원리로서 전형은 변화하지 않는가 등 원형에 대한 질문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하여 규범으로서 전형이 시행되기 위해서 향후 진행되어야 할 과제와 제도의 측면에서 전형에 대한 소견을 언급하고자 한다.

'전형'이 규범용어로 채택된 이상 추상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무형문화재 종목별 전형의 구체적인 기준 제시는 필연적이다. 전형의 법적 정의가 추상적이어서 주관성이 더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규범용도에 맞

는 전형의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다양한 학술상의 의미와 해석을 참고하되 그 핵심은 무형문화재 지정·인정 및 보전·진흥의 관점과 기준에 맞는 '전형'을 설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무형문화재에 있어서 전형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는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다. 학계에서 벌어진 발탈에 대한 전형논란³⁵도 전형을 설정하기 위한 참고사례가 될 수 있다. 문화재청의 정책성과에서도 참고할만한 사례가 있다. 최근 무형문화재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진행된 '종목별 핵심 기·예능 설정작업'이 그것이다. 이것은 종목을 지정하여 무형문화재를 전승할 경우, 어떠한 가치를 전승하고 보존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서 시작된 것이다. 이에 따라 지정 당시부터 현재의 시점을 기준으로 지정된 무형문화재가 지니고 있는 다양한 전승요소 중에 가장 핵심적인 기·예능을 설정하는 것으로 구체화되었다. 이 핵심 기·예능은 종목 지정 및 보유자 인정조사의 평가기준이 되고 지정된 종목이 지속적으로 보존·전승해야 할 기준이 된다. 따라서 무형법의 '전형유지'원칙의 시작은 종목의 지정·인정 행위임을 감안할 때 핵심 기·예능의 설정 작업과 전형의 기준을 설정하는 일은 서로 연결하여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무형문화재의 특성을 감안하면 전형에 대한 결론은 쉽게 도출되지 않을 것이다. '전형'을 확인하기 위한 다양한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조사평가 규정에 반영하는 방안 등 전형의 기준을 마련하는데 한층 더 심화되고 다양한 방법적인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전형의 고착성'에 대한 우려이다. '전형유지'가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의 기본원칙으로 규정됨에 따라 제기할 수 있는 문제의식이다. 살아있고 변화하는 무형문화재의 전승과 계승발전을 담았다는 무형법의 제정 취지에 반하는 논리적 모순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으로도 들린다. 이에 대하여 제도적 측면에서 이해를 구해본다. 앞서 언급한 대로 '전형' 또는 '전범'은 무형법의 법제연구에서 제

34 허용호, 2015, 「'원형'의 신화, '전형'의 논리-발탈에서의 원형과 전형논란을 중심으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생산적 재고』, 무형유산학회가을 정기학술대회 및 총회.

35 허용호, 2015, 앞의 책.

한적으로 제안된 바 있었고, 무형법 발의 안에는 ‘전형유지’의 기본원칙은 규정되지 않았다. 다만 보유자(보유단체)의 정의에서 ‘기능 또는 예능을 전형대로 체득한 자’로 규정하면서 전형을 제한적으로 규정하였다. 이는 원형의 경직되고 박제화된 측면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다 유연하고, 다원화된, 창의적인 전승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전형 역시 원형처럼 무형문화재 전승이 나아가야 할 지침 내지는 지향의 의미에 국한된 것이었다. 그런데 입법검토 과정에서 ‘전형’은 현행 문화재보호법의 기본원칙인 ‘원형유지’와 동일한 선상에서 검토되기에 이른다. 전형을 별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무형법의 기본원칙을 ‘전형유지’로 규정하게 되었다. 이는 ‘문화재 보존관리’라는 문화재청 본연의 임무를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는 법제도의 보수적 특성으로 이해를 구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 하나 더 이해를 구하자면, 제도가 무형문화재를 대상으로 할 경우에 법령의 취지와 실제 집행 사이의 간극 또는 양면성의 존재가 불가피하다는 사실이다. 법령의 취지대로³⁶ 무형문화재의 창의적 계승, 인류문화의 발전 등 포괄적인 보호정책을 표방하지만 종목지정과 보유자 인정, 사후 보존관리 등 구체적으로 제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전형유지’처럼 보호의 기준을 설정하여 정책을 시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무형문화재가 제도의 영역에 들어있는 이상 세대 간의 전승을 통해서 무엇을 유지하고 보존해야 한다는 원칙의 개입은 불가피해 보인다.

V. 맺음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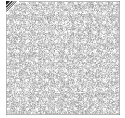
원형이 폐기된 무형법은 2012년 국회에서 발의되어 2016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따라서 지금 무형문화재의 원형규범을 검토하는 것은 시점 상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법규상의 원형규범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해보자는 취지를

명분으로 삼았지만 이 또한 무형법 제정에 대비하여 원형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이 글은 원형을 폐기하고 전형을 택한 시점에서 작성하였기 때문에 논고의 전개방식은 원형규범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이를 제도상의 정황과 맞추어가는 형식을 취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원형규범의 사회적 수용양상과 법규로서 적용실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원형에 대한 문제점 중심의 생각에서 벗어나 다소 유연한 인식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최초의 논제였던 ‘무형문화재 원형규범의 문제점과 의미고찰’을 ‘무형문화재 원형규범의 이행과 의미고찰’로 변경하였다. 또한 규범으로서 ‘전형’이 가지는 의미를 원형과의 차별성과 함께 관련성의 관점에서도 고찰함으로써 원형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

제도시행 초창기 원형규범은 독자성과 정체성을 지니고 있었으나, 보유자 인정제도와 전수교육제도를 핵심으로 하는 무형문화재 보호정책과 결합되면서 무형문화재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가로막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형규범은 근대화, 서구화 등의 부환경으로부터 우리 전통문화를 보존하기 위한 사회적 실천의 지침 내지는 지향점을 내포한 시대적 담론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시대적 상황에서도 원형이 갖는 지향점은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36 무형법 제1조(목적) : 이 법은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을 통하여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참고문헌

* 무형문화재 조사보고서

- 문화재청, 2008, 「무형문화재 조사보고서」 제291호
- 문화재청, 2007.5, 「무형문화재 조사보고서」 제289호
- 문화재청, 2000.11, 「무형문화재 조사보고서」 제263호
- 문화재청, 2000.6, 「무형문화재 조사보고서」 제260호
- 문화재관리국, 1988, 「무형문화재 조사보고서」 제178호
- 문화재관리국, 1995, 「무형문화재 공예종목발굴기능조사 연구보고서」 제222호

* 문화재위원회 회의자료 등

-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0, 「개정문화재보호법 해설」
- 문화재관리국, 1977, 「제2분과 문화재위원회 회의록(1976년)」 『문화재』 제11호
- 문화재관리국, 1972, 「제2분과 문화재위원회 회의록(1971년)」 『문화재』 제6호
- 문화재청, 2011,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연구」,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 중앙대학교 한국문화유산연구소, 2006, 「중요무형문화재 원형보존과 재창조 가이드라인」

* 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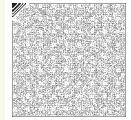
- 배영동, 2005, 「문화콘텐츠화 사업에서 '문화원형' 개념의 함의와 한계」 『인문콘텐츠』 제6호, 인문콘텐츠학회
- 송준, 2009, 「한국 무형문화재정책의 현황과 발전방안」,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성경린, 1982, 「중요무형문화재 보존전승」 『문화재』 15호, 문화재관리국
- 이보형, 1987, 「중요무형문화재와 창자자와의 관계」 『월간 춤』 12월호
- 이재필, 2011, 「무형문화재 보호제도의 이행과정과 그 성과에 관한 검토」 『문화재』 제44권 4호
- 임석재, 1982,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앞으로의 방향」 『문예진흥』 84, 한국문화예술진흥원
- 임재해, 2007, 「무형문화재의 가치 재인식과 창조적 계승」 『한국민속학』 제45집
- 정병호, 1988,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의 개선방안-민속놀이와 민속무용을 중심으로-」 『한국민속학』 제21호
- 채희완, 1988, 「전통연희의 창조적 계승문제」 『한국의 민속예술』, 문학과지성사
- 한양명, 2006, 「중요무형문화재 예능분야의 원형과 전승문제에 대한 반성적 검토」 『한국민속학』 44집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문화재관리국, 1996,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시 전승자 선정기준과 조사방법의 개선방안」 『중요무형문화재 효율적 관리 방안 연구』
- 허용호, 2015, 「'원형'의 신화, '전형'의 논리-발탈에서의 원형과 전형논란을 중심으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생산적 재고』, 무형유산학회 가을 정기학술대회 및 총회

* 신문자료

- 경향신문, 1968.6.12, "민족문화개발위신설"

참고문헌

- 경향신문, 1968.6.8, “탈춤의 정수모아 율동과 극과 무대의 조화를”
- 경향신문, 1968.5.6, “천년이여 온 찬불가무 사라져가는 원형보존”
- 경향신문, 1968.3.27, “탈춤 산대놀이 무대화”
- 경향신문, 1962.10.3, “국보재지정과 무형문화재”
- 동아일보, 1967.5.11, “국악현대화운동에 대한 건의”
- 동아일보, 1966.6.30, “고고한 겨례의 선율-양악에 쫓긴 민속악보화·정리시급-”
- 한겨레, 1990.4.7, “판소리, 민요 등 무형문화재발표회-10일부터 8개 종목 원형보존 점검무대-”
- 한겨레, 1989.10.15, “안성남사당 전통성 시비”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Preserving the Original Form” to Intangible Heritage and Its Meaning

Lee Jae Phil

National Intangible Heritage Center, Research & Archiving Division

Abstract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of recognizing masters of craft and performance skills in 1970, the principle of “preserving the original form,” which was already in general use, was adopted as a legal principle in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While the concept “original form” can be related to tangible elements of heritage through the Act, the intangibility of craft and performance skills does not allow their pinpointing at a particular temporal period or the identification of a particular master from the past as the basis of an original form. Therefore, those craft or performance skills that are available at the point of recognition of relevant masters must serve as the basis of the original form for the intangible heritage concerned. This means that the principle of preserving the original form of intangible heritage has been implemented not based on a fundamental form of materiality, but rather on the craft or performance skills that may be held by a master at the time of his/her recognition as a “temporary original form.”

This principle has been observed through intangible heritage transmission and education policies for recognized masters and their trainees, contributing to establish an elitist transmission environment in which public were denied to join the education on intangible heritage. Even with policies guided by the principle of preserving the original form, designated craft and performance skills have been transformed contingent upon given social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thus hindering the preservation of the original form.

Despite the intrinsic limitations of the principle of preserving the original form when applied to intangible heritage, this principle has served as a practical guideline for protecting traditional Korean culture from external influences such as modernization and Westernization, and also as an ultimate goal for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heritage, engendering actual policy effects.

The Act on the Safeguarding and Promo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at comes into effect in March 2016 takes the constantly evolving nature of intangible heritage into consideration and resultantly adopts a concept of “essential form” (jeonhyeong) in place of “original form” (wonhyeong). This new concept allows

for any transformations that may take place in the environment surrounding the intangible heritage concerned, and is intended to mitigate the rigidity of the concept of “original form.”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essential form,” which is manifested as the unique significance, knowledge, and skills delivered by the intangible heritage concerned, should be maintained according to the guidelines and principles related to heritage conservation. Therefore, the new concept can be understood not as a rupture, but more as a continuum of the concept of “original form.”

Key Word Principle, Original form, Essential form, Preserving the original form, Safeguarding the essential form

Received 2016. 02. 29

